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1 7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6가합541616 이행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
원 고 1. 주식회사 A
2. 아산개발 주식회사
3. 글로리 제1차 투자조합
피 고 회생회사 B 주식회사의 관리인 C의 소송수계인 B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17. 7. 7.
판 결 선 고 2017. 8.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2,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4. 14.부터 2016. 8. 4.까지는 연 1.1%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회생회사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를 인수하기 위하여 D 컨소시엄(이하 '원고 컨소시엄'이라 한다)을 구성하였고, 원고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위 D 컨소시엄의 대표자이다. 피고는 B의 관리인이다.

나. B는 2015. 12. 21. 삼일회계법인을 매각주간사로 하여 인수의향서 등 안내서를 인수희망자들에게 제공하였고, 원고 컨소시엄은 2016. 4. 6.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2016. 4. 14. B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M&A에 관한 양해각서(이하 '이 사건 양해각서'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회생회사 B 주식회사 M&A에 관한 양해각서(MOU)

본 양해각서는 2016년 4월 14일 아래의 당사자 사이에 체결되었다.

“갑” : 회생회사 B 주식회사

강원도 황성군 F

공동관리인 G, H

“을” : D 컨소시엄

컨소시엄 대표자

주식회사 E

컨소시엄 참가자

아산개발 주식회사

글로벌 제1차 투자조합

제4조(이행보증금)

1. “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본 양해각서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갑”명의 예금계좌에 입찰서류에 기재된 입찰금액의 5%인 금 이십오억원(W2,500,000,000)(이하 ‘이행보증금’)을 예치한다. “갑”과 “을”은 “을”의 이행보증금 및 이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의 반환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예금계좌 상의 예금채권에 관하여 별첨의 질권설정

계약서와 같이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2. 제7조에 따라 투자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이행보증금(발생이자 포함)은 투자계약상의 계약금 중 일부로 충당하기로 한다.

3. 투자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채 제10조 제2항에 따라 본 양해각서가 해제되거나, 기타 “을”의 귀책사유로 본 양해각서가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 이행보증금(발생이자 포함)은 위약벌로서 “갑”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하며, 이 경우 예금채권에 설정된 질권은 질권설정계약서 제9조에 따라 자동 소멸된다. “을”의 귀책사유 없이 본 양해각서가 해제되거나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갑”은 이행보증금(발생이자 포함)을 즉시 “을”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제7조(투자계약의 체결 및 계약금의 납입)

1. “갑”과 “을”은 제5조에 의한 실사 완료 후 제6조에 따라 인수대금이 확정되는 경우 그 확정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이하 “투자계약 체결기간”) 투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갑”과 “을”이 투자계약 체결기간 연장을 합의하여 회생법원의 허가를 득한 경우 5영업일 범위 내에서 투자계약 체결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양해각서의 효력 등)

1. 본 양해각서는 “갑”과 “을”이 본 양해각서에 기명날인하고 회생법원의 허가를 얻은 때에 효력이 발생하며,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가 도래하는 때에 효력을 상실한다.

1) 투자계약이 체결되거나 본 양해각서가 해제되는 경우

2) 제7조 제1항에 정한 기간(연장기간 포함) 내에 투자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2.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갑”은 “을”에 대한 서면통지로 본 양해각서를 즉시 해제할 수 있다.

4) “을”의 귀책사유로 투자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5) “을”이 본 양해각서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갑”으로부터 그 이행을 최고받고도 그 최고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 원고 컨소시엄의 구성원인 원고 아산개발 주식회사(이하 '아산개발'이라 한다)는 2016. 4. 14.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I)에 이행보증금 25억 원을 예치하였고, 같은 날 원고 아산개발은 B와 위 이행보증금에 대한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이후 하나은행으로부터 질권설정 승낙을 받았다.

라. 원고 컨소시엄이 2016. 4. 28. B에 대한 실사를 종료함으로써 투자계약 체결 종료

일이 2016. 5. 12.로 정해졌는데, 원고 컨소시엄은 2016. 5. 10. B에게 투자계약 체결기간 연장을 요청하였고, B는 2016. 5. 12. 오전에 회생법원에 투자계약 체결기간을 2016. 5. 19.까지로 연장하여 달라는 내용의 연장신청을 하였다.

마. 원고 컨소시엄은 2016. 5. 18. B에게 투자계약 체결을 원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B가 이에 답변을 하지 아니하여 투자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다.

바. 원고 컨소시엄은 2016. 5. 23. B로부터 법원에서 투자계약 체결기간 연장신청이 불허가되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고, 이에 2016. 5. 25.부터 2015. 5. 30.까지 B에게 3회에 걸쳐 이행보증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B는 2016. 7. 4. 원고 컨소시엄에게 이 사건 양해각서를 해제하고 이행보증금을 B에게 귀속시킨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양해각서는 원고 컨소시엄과 B가 계약 체결기간 이내에 투자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효력이 상실되었고, 원고 컨소시엄에게 위 양해각서의 효력상실에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양해각서 제4조 제3항에 따라 D 컨소시엄이 피고에게 예치한 이행보증금 2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 글로리제1차투자조합(이하 '글로리조합'이라 한다)이 투자계약 체결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들은 계약체결 기한 연장신청을 하였고, 2016. 5. 12. 당시 원고들은

투자계약 체결을 하기 위한 계약금을 마련하는데 있어 내부적인 분쟁이 있어 B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것이다. 피고는 원고들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체결로 이 사건 양해각서를 해제하였고, 이행보증금은 위약벌로서 피고에게 귀속되었다.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 글로리조합이 투자계약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여 원고 컨소시엄 구성원간의 의견 조율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투자계약 체결기간 연장신청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5, 16, 17, 18, 19호증의 기재, 증인 G, J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원고 컨소시엄과 B 사이의 투자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은, B가 법원으로부터 투자계약 체결기간 연장에 대한 허가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고, 원고 컨소시엄은 이 사건 양해각서에 따라 B와 사이에 투자계약을 체결할 의사를 밝혔고, 투자계약 체결을 위한 노력을 다하였는바, 이 사건 양해각서가 효력을 상실한데 대하여 원고 컨소시엄의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양해각서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행보증금 2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이행보증금을 받은 날인 2016. 4. 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6. 8. 4.까지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예치금에 대한 하나는 행의 예금이자 상당액인 연 1.1%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를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1) 원고 글로리조합이 투자계약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여 원고 컨소시엄 구성원간의 의견 조율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원고 E가 B의 관리인 H에게 투자계약

체결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B는 원고 컨소시엄의 요청을 받아들여 2016. 5. 12. 회생법원에 투자계약 체결기간 연장신청을 하였는바, B는 원고 컨소시엄의 계약체결기간 연장 요청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2) 투자계약 체결기간이 지난 2016. 5. 17. 원고 컨소시엄과 B, 매각주간사인 삼일회계법인의 회계사들, B의 채권자들 등 관계자들은 회생법원에서 열린 관계자 회의에 참석하였는데, 당시 원고 컨소시엄이 B를 인수한다는 것을 전제로 계약조건과 세금문제, 특수관계자 이슈 등에 관하여만 협의를 하였을 뿐, 계약 체결기간이 경과하였으니 더 이상 계약 체결을 할 수 없다는 등 계약 체결기간 연장에 대한 허가 여부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아 이 사건 컨소시엄과 B 모두 투자계약 체결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생각하였다.

3) 원고 컨소시엄은 2016. 5. 18. B에게 이 사건 양해각서에 따라 투자계약을 체결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는데, B는 원고 컨소시엄의 계약체결 요청 공문에 대하여 답을 하지 않았고, 2016. 5. 23. B의 관리인 H이 법원으로부터 계약체결기간 연장신청이 불허가 되었다는 것을 원고 컨소시엄에 알려왔다.

4) B의 공동관리인이었던 G은 투자계약 체결기간 연장신청 전에 원고 컨소시엄이 계약 체결에 필요한 계약금 25억 원 이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원고 아산개발은 2016. 5. 18. 약 35억 원의 예수금이 있었고, 2016. 5. 12. 당시에도 35억 원에 상당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현금화하여 계약금을 지급할 수 있었던 상태였으므로, 원고들은 언제든지 투자계약을 체결할 준비를 다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원고 아산개발이 원고 E를 이행보증금 납부이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서울중앙지

방검찰청에 사기로 고소하고, 원고 E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67731호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원고 E는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2016형제108423호로 '투자계약 체결 자금을 마련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원고 아산개발은 원고 E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하였다.

3. 결 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부상준
-----	----	-----

판사	손혜정
----	-----

판사	강명중
----	-----